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35
----------	---------

제안연월일 : 2020년 12월 17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교육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수정하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까지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의 적용일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5조제3항제1호 “서울시교육청”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수정함.
- 안 부칙 제1조와 제2조 적용일을 수정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제1호 중 “서울시교육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1월 21일”을 “5월 1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1월 20일”을 “4월 30일”로 하며 “1월 21일”을 “5월 1일”로 한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의 “국민생활체육회, 서울시교육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행사 다만,”을 “행사. 다만,”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 2021년 5월 1일 이후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 육 경 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121,000~157,300	181,000~235,300	423,000~549,9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73,000~94,900	110,000~143,000	244,000~317,200		
	제1·2 수영장	09 : 00 - 18 : 00	804,000~1,045,200	1,206,000~1,567,800	1,548,000~2,012,400	
		09 : 00 - 12 : 00	268,000~348,400	402,000~522,600	516,000~670,800	
		12 : 00 - 18 : 00	680,000~884,000	1,020,000~1,326,000	1,341,000~1,743,300	
	야구장	221,000~287,300	331,000~430,300	530,000~689,000		
	올림픽주경기장	516,000~670,800	774,000~1,006,200	1,252,000~1,627,60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148,000~192,400	222,000~288,600	355,000~461,500		
	체조관	41,000~53,300	62,000~80,600	138,000~179,4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5,000~58,500				
풋살구장(2시간)	32,000~41,60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571,000~742,300	857,000~1,114,100	1,267,000~1,647,100		
	보조경기장(2시간)	197,000~256,100	295,000~383,500	472,000~613,60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81,9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74,100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715,000~929,500				
	VIP룸(")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데크,광장(4시간, m ² 당)	210~27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 ~113,800	
		A2			77,800 ~101,100	
A3		63,400 ~82,400				
A4		61,800 ~80,300				
A5		45,600 ~59,200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24,000~291,200	336,000~436,800	538,000~699,400		
	축구장	1일	155,000~201,500	232,000~301,600	372,000~483,600	
		2시간	51,000~66,300	77,000~100,100	170,000~221,000	
	수영장	09:00-18:00	489,000~635,700	735,000~955,500	942,000~1,224,600	

		09:00-12:00	163,000~211,900	245,000~318,500	314,000~408,200		
		12:00-18:00	413,000~536,900	621,000~807,300	816,000~1,060,800		
	보행광장(4시간, m ² 당)		200~26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볼펜(2시간)		94,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목동 운동장	주경기장	1일	125,000~162,500	188,000~244,400	302,000~392,600		
		2시간	50,000~65,000	75,000~97,500			
	야구장	1일	111,000~144,300	167,000~217,100	466,000~605,800		
		3시간	66,000~85,800	100,000~130,000			
	실내빙상장		102,000~132,600 (1시간)	153,000~198,900 (1시간)	7,331,000~9,530,300	110,000 ~143,000 (1시간)	
	다목적구장		89,000~115,700(1면, 2시간)				
효창운동장	1일		125,000~162,500	187,000~243,100	300,000~390,000		
	2시간		50,000~65,000	74,000~96,200			
장충체육관	체육관		129,000~167,700	193,000~250,900	451,000~586,300		
	보조체육관(3시간)		25,800~33,500	60,000~78,000	79,800~103,700		
	다목적실(3시간)		12,000~15,600	31,200~40,600	37,200~48,400		
독섬승마훈련원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신월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창동문화 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224,900				
산악문화 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205,400				
	다목적실		352,000~457,600				
	시청각실		232,000~301,6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32,500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시설 내 집기 대여료와 데크·광장 및 그 밖에 체육시설에 부수되는 공용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8.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9. 목동다목적구장에서 단일경기로 경기장 전체를 사용하는 연식야구·티볼경기 등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2면, 2시간 기준 40,000원~52,000원으로 한다.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사용허가) ①·② (생략)</p> <p>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u>국민생활체육회</u>, <u>서울시교육청</u>(산하 지역교육청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u>행사</u> <u>다만</u>, 시장과 협의 없이 프로구단이 시를 연고지로 하게 된 경우 제5호에 따른 일반행사로 규정할 수 있다.</p> <p>2. ~ 5. (생략)</p>	<p>제5조(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 <u>서울특별시교육청</u>----- ----- ----- ----- ----- ----- ----- ----- ----- ----- <u>행사. 다만</u>, ----- ----- ----- -----.</p> <p>2. ~ 5. (현행과 같음)</p>